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(이하 이 조에서 “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심사·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
4.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
5.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의 어업재해 피해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.

1.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
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3조에 따른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

3. 「어장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
5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체계

③ 법 제10조에 따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전라북도”를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“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”을 “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“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”을 “해당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가 속해있는 시·군·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”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지구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)”를 “(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각각 “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구별수협 총회”를 “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총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지구별수협”을 “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</u> <u>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</u> <u>장 통합관리 정보체계(이하 이</u> <u>조에서 “양식장 통합관리 정보</u> <u>체계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</u> <u>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</u> <u>관한 사항</u> <u>2.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<u>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면허</u> <u>심사·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</u> <u>4.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<u>5.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</u> <u>제3호의 어업재해 피해 현황</u> <u>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</u> <u>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6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</u> <u>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</u> <u>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에</u> <u>관한 사항</u> <u>7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</u> <u>정하는 사항</u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.

1.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

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3조에 따른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

3. 「어장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

5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
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체계

③ 법 제10조에 따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.

제10조(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

제10조(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

특례)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,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·영광군·함평군·무안군·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면허의 결정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) ① (생략)

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

특례) ① -----

----- 전북특별자치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면허의 결정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

4. ~ 6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24조(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)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<u>지구별수협</u>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. <u>어촌계·내수면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</u> 해당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자 ② (생략) 제26조(<u>지구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</u>)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	<u>한다</u>)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) ①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지구별수협</u> <u>또는 업종별수협</u>----- ----- ----- 2. <u>해당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가 속해있는 시·군·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26조(<u>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</u>) ----- -----
--	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<u>지구별수협</u>이 어류등양식업 · 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.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<u>지구별수협</u>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<u>지구별수협 총회</u>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. 다른 <u>지구별수협</u>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. (생략)	----- -----. 1. <u>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</u> ----- ----- 2. ----- <u>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</u>---- ----- ----- ----- 3. ----- <u>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총회</u>-- ----- 가. -- <u>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</u>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
--	---